「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)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농업기술센터장 최 용 희

2. 제안이유

가.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후속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인근 부지 확보 필요

나. K-푸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생산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제품 양산~글로벌 인증·수출까지 지원하는 푸드테크 산업 기반 조성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선산읍 이문리 532번지 외 3필지

○ 대　　상 : 토지 4,723㎡

○ 기준가격 : 377백만원

- 토　　지 : 377백만원 (공시지가)

○ 사 업 비 : 1,300백만원(시비)

○ 사업기간 : 2027년 1월 ~ 12월

○ 주요시설 : 공유공장, 연구시설 등 식품 제조 인프라

○ 추진현황

- 신규사업 기획 및 중앙부처 사업 건의 : '26. 2. ~ 11.
-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: '26. 7. ~ 11.
- 토지소유주 협의 : '26. 8.
-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: '26. 9.

○ 향후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: '26. 10.
- 감정평가의뢰 및 매매계약 체결 : '27. 2.
- 부지매입 : '27. 상반기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4건	4,723	377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4건	4,723	377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매각시기	사 유	재산소유자	비고
	재산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총계			4,723	377				
취득	토지	이문리 532	1,503	117	2027년	사업부지 매입	유*용	
		이문리 570	1,385	117			이*수외1	
		이문리 569-1	453	35			이*수외1	
		이문리 569	1,382	108			김*원	

위 치 도


매입대상지
시유지
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


선산IC
화물차공영차고지
푸드테크
연구지원센터
지역혁신
클러스터
농업기술센터
선산중학교
선산시장
선산읍
행정복지센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후속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, 향후 공유공장 및 연구시설 등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푸드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업기반 마련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- 특히 대상 토지는 총 4,723㎡로, 향후 공유공장 및 연구시설 등 푸드테크 관련 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인 만큼,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.

- 다만, 현재 신규사업 기획 및 중앙부처 사업 건의 단계로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13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만큼,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한 시설 조성이 지연되거나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등 재산의 비효율적인 활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과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, 사업 미선정 시에도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